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우주개발진흥법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「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33016호, 2022. 12. 6. 공포, 12. 11. 시행)됨에 따라, 우주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신청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(안 제10조의2 신설)

우주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와 신청기술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처리기관은 별지서식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일부개정법률안

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) ① 영 제19조의11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 서식의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.

1.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
 2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
 3.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 인정기구(KOLAS)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
 4.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
- ② 영 제19조의11제5항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8호의6 서식과 같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2(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) ① 영 제19조의11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.</u> <u>1.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</u> <u>2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</u> <u>3.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(KOLAS)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</u> <u>4.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</u> <u>② 영 제19조의11제5항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8호의6서식과 같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4624